

#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2,727,182	9,681,815
일반회계	241,039,593	7,231,188
특별회계	81,687,589	2,450,628
공기업특별회계	7,385,749	221,572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7,385,749	221,572
기타특별회계	74,301,840	2,229,05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453,759	313,61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49,054	16,472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16,561	27,497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32,574,193	977,226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0,350,002	310,50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766,237	142,987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150,508	64,51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2,032,823	360,985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396,239	11,887
기반시설특별회계	112,464	3,37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생략"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285,22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